인제 라온 프라이빗 입주자모집공고(안)

■ 이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7.10.23.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이 기간 내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은 편리가준임)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등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청약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본 이해의는 "스탠리, 및 "지에스임크리트 공동지었어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거래허가 대상 지역이 아르도시기본계획 수립지 대한토지거래구역 2017년 9월 28일지로 체결한 스탠리에 내용에 따라 공급되는 것입니다.
■ 이 주택은 주택청약에도 해당 내용을 상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17.11.24.개정] 적용되오니, 이해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이해는 기존의 주택청약 입퍼트에 의한 청약방법에 따라 인터넷청약에 의한 청약방법 청약으로 공고 일으로부 청약 인터넷청약 기간 및 공이인시행 방법만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기 청약하시는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분양신 가해시고 등에 관한 법률"(2017.10.20.시행)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 부동산 개발의 신고를 시장주체와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개발의 신고에 따른 필요한 분양서류를 시장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시를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주택공급 신청자격 등) 본 주택은 공공결재에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되는 시장주체가 당당하며, 등 · 호수 배정은 공공결재에서 심사됩니다.
2017.10.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 해당조주택 공급방식이 추첨제에서 선정방식이 변경되었으며, 주택청약 공정 기준이 높은 순으로 해서선정을 우여하고 는 공주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3항 의거 해당조주택 공급방식은 공정에는 순위별 따라 청약공급 대상 주택수의 최대변최소수준이는는 정상한대로 해당조주택을 선정합니다. 선정된 해당조주택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해당조주지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시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on-inje.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 중 공공결 기준에 의거 해당조주택 공급방식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조주택 공급방식 변경 사항을 즉시 공개하오니 청약자 본인은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7항 의거 해당조주택 공급방식은 공정에는 순위별 따라 청약공급 대상 주택수의 최대변최소수준이는는 정상한대로 해당조주택을 선정합니다. 선정된 해당조주택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해당조주지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시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on-inje.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 중 공공결 기준에 의거 해당조주택 공급방식 변경 사항을 즉시 공개하오니 청약자 본인은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이해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8항 의거 해당조주택 공급방식은 공정에는 순위별 따라 청약공급 대상 주택수의 최대변최소수준이는는 정상한대로 해당조주택을 선정합니다. 선정된 해당조주택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해당조주지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시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on-inje.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 중 공공결 기준에 의거 해당조주택 공급방식 변경 사항을 즉시 공개하오니 청약자 본인은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법 제15조 제1항 의거 해당조주택 공급방식은 공정에는 순위별 따라 청약공급 대상 주택수의 최대변최소수준이는는 정상한대로 해당조주택을 선정합니다. 선정된 해당조주택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해당조주지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시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on-inje.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 중 공공결 기준에 의거 해당조주택 공급방식 변경 사항을 즉시 공개하오니 청약자 본인은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2017.10.20.시행)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시장주체와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따른 필요한 분양서류를 시장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시를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주택공급 신청자격 등) 본 주택은 공공결재에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되는 시장주체가 당당하며, 등 · 호수 배정은 공공결재에서 심사됩니다.
2017.10.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 해당조주택 공급방식이 추첨제에서 선정방식이 변경되었으며, 주택청약 공정 기준이 높은 순으로 해서선정을 우여하고 는 공주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3항 의거 해당조주택 공급방식은 공정에는 순위별 따라 청약공급 대상 주택수의 최대변최소수준이는는 정상한대로 해당조주택을 선정합니다. 선정된 해당조주택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해당조주지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시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on-inje.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 중 공공결 기준에 의거 해당조주택 공급방식 변경 사항을 즉시 공개하오니 청약자 본인은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법 제15조 제1항 의거 해당조주택 공급방식은 공정에는 순위별 따라 청약공급 대상 주택수의 최대변최소수준이는는 정상한대로 해당조주택을 선정합니다. 선정된 해당조주택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해당조주지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시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on-inje.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 중 공공결 기준에 의거 해당조주택 공급방식 변경 사항을 즉시 공개하오니 청약자 본인은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세대 : 9세대

구분	대상세대	59	84	비고
세대수	9	3	6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디자이가"상 L 누무무만장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과 반영해 이행.

■ 인터넷 청약서비스 안내페이지를 통하여진행 (0600~17:30)

■ 일반공급

-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에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서비스 제휴를 시행하고 있어 1일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청약 접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청약방법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이용대상	공통	- 방문 :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2017.11.29.) 현재 해당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경과한 자	
		- 인터넷 :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는 자	
인터넷	인터넷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자	
이용방법 및 절차	인터넷	- 국민은행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전체서비스 → 주택청약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 → APT인터넷 청약 → 청약신청

※ 상기 청약일 시점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11.29.) 이후 발행되어 현재의 상기 기재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변경 가능하다.
- 신청자의 주소지 및 인터넷 접속 장소는 청약신청일의 상황에 따라 유리한 곳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청약 참여은행 : 기업, 국민,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서민주택, 신한은행
※ 본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시 방법과 청약 및 계약에 등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청약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2. 일반공급

- 신청자격
-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11.29.) 현재 인제군 및 강원도에 거주하는 만6세 이상인자로써에서 가주하는 세대원의 세대주 및 세대원에 속한 자로 만 1년 경과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인제군에 거주한 자가 우선됨.
- 신청자의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11.29.) 현재"에 의한 "전문의가 및 기준으로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의거 해당조주택 공급대상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7.11.29.) 현재 주택건설지역의 인제군을 포함한 강원도 거주자이거나 해당조주택 건설지역의 해당시장에서 2순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 본 주택은 비투기지역지역이 공급되는 인영주택으로 과거 당첨사실이 있어도 청약이 가능하다.(2017.10.2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 신청자는 1명의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단위에 대해 중복신청이 불가하고 1인은 신청기능하며, 만 21이 상의 신청자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니다.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자에 예금등록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일로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관계 해제되어 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주택소유 부적격 확인기해 는는 당첨일로부터 년 된은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는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 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청약대상을 기업은 후 예치금에서 제외 주택에서 주택공급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연면적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로 한다.
- 청약자는 기업은 주택공급 이전 주택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 또는 수도권 지역 거주자 주거지 변경 경우 해당 기업은 자격에서 제외되어 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청약방법으로 당첨자임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다.
- 청약신청 가능한 청약대상자 예다등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항 별표2 관련

구분	순위	신청가능	청약관련 신청자격
무주택기간	1순위	공통	• 전용면적 85㎡이하 가점제 40% 추첨제 60% 적용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11.29.) 현재 입주자 저축 갖간이 아래의 순위를 충족하는 자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청약1 가능한 예치금액을 상강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② 청약부금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해당 약정납입일을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회수 24회 이상인자 또는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주택소유 여부 및 세대주 여부 등 청약저축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자
		일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2017.11.29.) 현재 만 19세이상 입주자로 선정되면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자로 한다 단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결혼 또는 주택법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주택소유 여부 및 세대주 요건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11.29.) 현재"에 의한 "전문의가 및 기준으로 함.
- 청약자는 1명의 발표일 동일한 주택 단위에 대해 중복신청이 불가하고 1인은 신청기능하며, 만 21이 상의 신청자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니다.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자에 예금등록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일로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관계 해제되어 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주택소유 부적격 확인기해 는는 당첨일로부터 년 된은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는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 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청약대상을 기업은 후 예치금에서 제외 주택에서 주택공급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연면적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로 한다.
- 청약자는 기업은 주택공급 이전 주택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 또는 수도권 지역 거주자 주거지 변경 경우 해당 기업은 자격에서 제외되어 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청약방법으로 당첨자임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 에 의거 처벌될 수 있다.

구분	전용면적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의거 해당조주택 공급방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이상인 자로 선정수가 정해졌을 경우에는 주택의 유형에 따른 공급비율 에 의거 해당조주택 공급방식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 순위별 주택공급 방식

구분	순위	신청가능	청약관련 신청자격
일반공급	1순위	공통	• 전용면적 85㎡이하 가점제 40% 추첨제 60% 적용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11.29.) 현재 입주자 저축 갖간이 아래의 순위를 충족하는 자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청약1 가능한 예치금액을 상강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② 청약부금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해당 약정납입일을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회수 24회 이상인자 또는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주택소유 여부 및 세대주 여부 등 청약저축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자
	2순위	전 주택형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강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 예금 포함)에 가입 자

- 지역 우선 공급 기준

구분	지역우선 공급 기준
일반공급	1순위 : 인제군 및 강원도 거주자
	2순위 : 기타 지역 거주자

- 주택공급 신청자격 및 방법 등 기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해당조주택 공급방식 변경 사항을 즉시 공개하오니 청약자 본인은 이점 유의 바랍니다.
- 주택공급 신청서는 "인제군 홈페이지 주택공급 게시판 에서 다운로드 하여 작성 후 인제군 주택과 방문 접수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 신청서 접수 기간 : 2017.10.25. 부터 2017.10.27. 까지 (3일간)
- 접수 장소 : 인제군청 주택과 (인제군 인제읍 남북로 1길 3 인제군청 본관 2층 주택과 사무실)
- 접수 방법 :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 (우편접수 시 2017.10.27. 까지 도착 분 인정)
- 주택공급 신청서 접수 시 유의사항 및 당첨자 발표 일정 : 주택공급 신청서 접수 시 제출한 주택공급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이 미흡하거나 기재사항 누락 등 이 있을 경우 보완 요청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